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 유형별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범위 -

2024. 8. 20.



**영 암 군**  
(민원소통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검찰보존사무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7조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47조, 형법 제126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포괄적임

####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정보' 에 해당하지 않음

❖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li> <li>○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li> <li>○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li> </ul>	공 통
공직자재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 비공개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li> </ul>	기획감사과
징계 등 비위에 관한 조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문서</li> </ul>	
근무성적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성적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성적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li> <li>-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li> <li>- 승진후보자 명부</li> </ul> </li> </ul>	자치행정과
징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 관련문서</li> </ul>	
지방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li> </ul>	세무회계과
상담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li> <li>○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0조)</li> <li>○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관련기록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0조)</li> </ul>	가족행복과
환자진료 (일반,한방,임상병리물리 치료,방사선,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 (의료법 제19조)</li> </ul>	보건소
감염병환자·의사환 자에 관한 환자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 (의료법 제19조)</li> </ul>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 (의료법 제19조)</li> </ul>	
민원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접수 중 민원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li> </ul>	민원소통과
도시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도기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3조의2)</li> </ul>	도시디자인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입법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 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의 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 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시설관리	○ 청사 자체 방호 계획 ○ 관련도면	세무회계과
보안 및 비밀업무	○ 보안문서의 수발 및 심사 사항 ○ 비밀취급인가 사항 ○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자치행정과
정보화및통신업무	○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군정홍보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군민안전과
민방위대 편성및관리	○ 민방위대 편성표 및 신고망 등 민방위대 현황	
충무/을지연습	○ 충무/을지연습 실시 계획	
전시인력동원	○ 전시자동차 및 건설기계 동원관련문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입법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함(서울 행정법원 2008구합31987)

### ❖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건축물,시설물관리	○ 다중이용시설등 시설도면,건축물등의 경비 위탁내용	공 통
인감,주민등록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소통과
CCTV관제센터 전산장비관리	○ CCTV통합관제실 내부 서버, 장비등의 배치도 및 현황 정보(IP등)	군민안전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사업	○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자에 대한 정보	가족행복과
미술작품구입	○ 작가의 명예 및 재산보호 정보	문화예술과
유물감정평가	○ 가격 및 가치의 환산에 따른 재산보호 정보	문화예술과
전염병 예방 위생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 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보건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봄

#### ❖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해당됨

#### ❖ 비공개 판단기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청사경비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 신분기록, 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
- 보안처분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과 같은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행정심판 및 소송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과
청문	○ 청문조서	기획감사과
부동산실명제 관리	○ 위반사범 통보자료 및 수사 자료	민원소통과
국공유재산 관리	○ 행정처분 및 수사자료	세무회계과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및 소송	○ 행정처분,소송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처분내역, 소송진행상황 수사 관련 정보	가족행복과
식품,공중위생업소 사건송치(고발)	○ 수사 자료	관광스포츠과
산림사범	○ 수사 자료	산림휴양과
도로점용허가	○ 행정처분 및 수사자료,행정소송,행정심판등 재판에 관한사항	건설교통과
무단방치차량 관리	○ 사건 수사관련 서류	건설교통과
무보험 운전자 송치	○ 진행, 수사중인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위반처리 제반사항	건설교통과
원인자부담금	○ 패소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등 재판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소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범	○ 사건 수사 관계 서류	친환경농업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대법원 2001두8827)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또는 견적실시 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li> <li>○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li> <li>○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li> <li>○ 불시 감사의 대상·시기·방법</li> <li>○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 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감독)</li> <li>○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 (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li> </ul>	
공무원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li> </ul>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li> <li>○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li> <li>○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li> <li>○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li> </ul>	공 통
규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li> <li>-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li> <li>※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 공개</li> </ul>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규제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li> <li>-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li> </ul> </li> </ul>	공 통
보안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감사 관련문서</li> </ul>	
채용,모집,공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위원의 항목별 점수표,심사표등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li> </ul>	
사업,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발주,개시전 사업계획등 내부검토중인 정보</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이전 신청서,첨부서류,허가결정에 관한 문서등의 정보</li> </ul>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자문 의뢰내용, 자문결과 등 공개시 자문변호사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li> </ul>	
비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관리 관련문서</li> </ul>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li> <li>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li> </ul> </li> </ul>	
입찰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li> <li>○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li> <li>○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li> </ul>	세무회계과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인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사항</li> </ul> </li> <li>○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li> <li>※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 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li> <li>※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li> </ul>	
시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li> <li>-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 (필기, 면접)</li> </ul> </li> <li>○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li> <li>○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li> <li>○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li> <li>※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li> </ul>	자치행정과
성과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li> <li>- 성과상여금 지급명부</li> <li>-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li> </ul> </li> </ul>	
토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전에 대한 감정평가정보</li> <li>○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재결서·감정평가서)</li> </ul>	해당 부서
공사관련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 감사 문서</li> </ul>	
조례규칙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li> </ul>	기획감사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대법원 2012다49933)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도 포함 (대법원 2011두2361)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과태료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공 통
개인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기재사항(이름,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공 통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공 통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자치행정과
징계, 상훈	○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 상훈 - 공적조서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입법취지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8두13101)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대법원 2008두 13101)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 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 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및 영업규모 등 제반사정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중앙행심 2012-24651)

### ❖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 세무조사 사항	세무회계과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정보	일자리경제과
에너지 관리	○ 석유, 및 가스판매업 위치, 용량 등	
공장등록 현황	○ 공장, 경영 및 영업상 비밀	
건설행정	○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건설교통과
전문건설업 현황	○ 전문건설업종별 연말 잔고 증명 확인	
건축인허가 정보	○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도면 일체	민원소통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됨

### ❖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국공유재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 및 대부계약서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li> <li>○ 목록 지번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세무회계과
주택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li> <li>○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검토결과</li> </ul>	도시디자인과
손실보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액 평가의뢰 자료</li> <li>○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li> </ul>	군민안전과